

산학협력 성과관리 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3.04.24.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 추진 성과의 확산 및 환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학협력 성과평가 실무 추진 업무에 필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경비 등 지원)

-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(지침)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3.04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